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0. 2. 9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審査經過

- 가. 발의일자 : 2010년 1월 26일
- 나. 발 의 자 : 최미경 의원 외 4인
- 다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1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회의(2010. 2. 2)  
상정 의결

## 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최미경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“셋째아이 50만원, 넷째아이 이상 70만원” 을  
“둘째아이 20만원, 셋째아이 50만원,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” 을 지원  
(안 제3조)

## 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1일 제정되어 출산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우리구 출산장려금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, 지원을 확대하여 타 자치구와의 형평을 기하고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
- 부칙에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규정의 개정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.

- 참고로 2010년 1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24개 구로 둘째의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, 셋째 30만원에서 100만원, 넷째 5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.

4. 審査結課：原案 可決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5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0. 1. .  
발 의 자 : 최미경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출산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우리 구 출산장려금이 타구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, 지원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타자치구와의 형평을 기하고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“셋째아이 50만원, 넷째아이 이상 70만원”을 “둘째아이 20만원, 셋째아이 50만원,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”으로 개정.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

(2)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4조, 제10조

나. 예산조치사항 : 있음(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)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셋째아이 50만원, 넷째아이 이상 70만원”을 “**둘째아이 20만원, 셋째아이 50만원,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규 대조표

현행 조례안	개정 조례안
<p>제3조(지원기준)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아이 50만원, 넷째아이 이상 70만원을 지원하며,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별로 지원한다.</p>	<p>제3조(지원기준)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아이 20만원, 셋째아이50만원,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며,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별로 지원한다.</p>